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98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허종식·김교흥·김동아

노종면 • 박성준 • 박찬대

유동수 · 이용우 · 이재관

이해식 · 이훈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욕, 런던, 베를린, 도쿄 등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입국 검역대상자의 90%가 인천국제 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서울 ·강원 등을 수도권이라는 한 권역으로 묶어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 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8%로 절반이 넘는 수준임에도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하나뿐인 바, 수도권 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로 설치・지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의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이 이미 소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밖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 지정하여야 할 것임.

이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권역을 경기강원권, 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등 주요 권역으로 분류하여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하고, 수도권에 2개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지정하도록 하여, 외부의 감염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규모 신종 감염병발생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전단).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전단 중 "권역별로"를 "경기강원권·인천권·충청권·호남권·경남권·경북권·제주권 등 주요 권역별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생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②		
및 치료 등을 위하여 <u>권역별로</u>	<u>경기강원</u>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권・인천권・충청권・호남권・		
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경남권·경북권·제주권 등 주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요 권역별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			
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